



ANDREW M. CUOMO
주지사

RICHARD A. BALL
커미셔너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소매 식료품점 임시 지침 업데이트

2020년 9월 28일

목적

본 지침은 소매 식료품점 소유주/운영자 및 고객에게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뉴욕의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소매 식료품점의 소유자/운영자는 또한 반드시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, DOH)의 필수 소매업 [임시 지침](#)(Interim Guidance for Essential Retail)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.

이 지침의 목표 대상인 소매 식료품점에는 슈퍼마켓, 보데가, 제과점, 전문 시장, 식료품을 제공하는 대형 슈퍼 및 창고 클럽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
배경

2020년 3월 7일 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[행정 명령\(Executive Order\) 202호](#)를 공표했습니다.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20일 "마틸다의 법(Matilda's Law)"을 발표했으며, 이 법은 뉴욕의 가장 취약한 인구를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입니다. 여기에는 70세 이상 노인, 면역력이 약한 사람,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. 여기 해당하는 뉴욕 주민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직계 가족 및 가까운 친구로 방문을 제한해야 합니다.

코로나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. 뉴욕 주민은 책임감 있게 안면 가리개 의무 착용,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여 뉴욕주에서 감염을 제한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감염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뉴욕에서 산업과 비즈니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발표했으며, 이를 통해 국가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면서 거의 모든 기업과 산업을 성공적으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.

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침

소매 식료품점은 상점이 영업을 시작하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나 상점이 개장하고 첫 1시간 내, 또는 가능한 경우 일반 대중이 이용하기 전에 노인과 면역계가 약한 사람들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.

또한 소매 식료품점은 Andrew M. Cuomo 주지사, 농업시장부(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), 보건부(DOH)가 발표한 "[식품 가공 시설 또는 식품 소매점의 코로나19 청소 소독 임시 지침](#)"(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Food Manufacturing Facilities or Food Retail Stores for COVID-19) 및 "[확산 방지](#)"(STOP THE SPREAD)포스터 등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.

소매 식료품점에서는 각 소매점의 입구에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을 게시해야 합니다.

*** 모든 고객에 대한 공지사항 ***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고령자 및 면역 손상 환자는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, 운영 시작 후 한 시간 내에 또는 일반 고객들이 상점을 이용하기 전에 상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.

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소매 식료품점에서 적절한 손과 호흡기 위생을 장려하고 위험이 큰 장소(화장실, 입구, 출구, 판매 시점 단말기 등)의 규칙적인 청소 및 소독을 장려하기 위한 절차와 소모품을 마련해야 합니다. 금전등록기의 판매 시점 단말기를 포함하여 하루 종일 접촉이 잦은 지점을 소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.

사회적 거리두기 및 철저한 위생을 장려하는 [문구](#)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모든 직원은 뉴욕주 [소매 식료품점 지침\(Retail Food Store Guidance\)](#)이 규정한 프로토콜을 명심해야 합니다.

소매 식료품점의 소유주/운영자에게 영향을 주는 지침

소매 식료품점은 다음과 같은 매장 내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.

- 가능한 장소에 직원과 고객을 위해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홍보하십시오. 소매 식료품점은 바닥 마커와 같은 표시를 계산대 줄이나 고객이 모일 수 있는 위치(델리 제품 줄, 고기 또는 생선 판매대 등)에 사용하여 고객이 서로 6피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 있을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.
- 소매 식료품점은 소매 제품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가능한 경우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직접 봉지에 넣도록 권장해야 합니다.
- 직원을 포함해 항상 매장 내 고객의 수를 매장 수용량의 50%로 제한하려 해야 합니다.
- 고객이 가능한 한 카트를 금전 등록기 및/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 소독용 티슈를 제공합니다.
- 뜨겁거나 차가운 조리 식품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으로만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.
- 델리 슬라이스나 조리 식품을 포함하여 공개 무료 시식 또는 시음을 없앱니다.
- 다음의 예시처럼 매장 내외부에 문구를 분명히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다음 내용을 알립니다.

○ 안면 가리개

- 기존 주법에 따라 안면 가리개를 소매점 내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 만 2세 이상이고 안면 가리개 착용에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행정명령 202.17호, 202.18호, 보건부 부속규정(Subpart) 66-3("부속규정 66-3(Subpart 66-3)") 및 기타 후속 조항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또는 천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. [2020년 4월 17일 코로나19 공중 비상사태 기간 중 안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202.17호 및 202.18호에 대한 임시 지침\(Interim Guidance on Executive Orders 202.17 and 202.18 Requiring Face Coverings in Public During the COVID-19 Outbreak, April 17, 2020\)](#) 참조.
- 소매 식료품 판매업자 및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보건부 하부 규정 66-3호 요건 및 해당하는 모든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. 참조: https://regs.health.ny.gov/sites/default/files/pdf/emergency_regulations/Enforcement%20of%20Social%20Distancing%20Measures.pdf
- 이러한 의무 사항은 반드시 연방 미국 장애인법(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) 또는 뉴욕주 또는 뉴욕시 인권법(Human Rights Law)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.
- 고용주는 반드시 [2020년 4월 14일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중 대중과 접촉하는 민간 및 공공 근로자의 안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202.16호에 대한 임시 지침\(Interim Guidance on Executive Order 202.16 Requiring Face Coverings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Interacting with the Public During the COVID-19 Outbreak, April 14, 2020\)](#)에 따라 대중과 접촉하는 필수 근로자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가능한 경우 한 번에 가족 한 명씩만 쇼핑하십시오.
-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폐기하십시오. 보호 장비를 상점이나 쇼핑 카트에 두지 마십시오.
- 상점에 허용되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.
- 노인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쇼핑 시간을 준수하십시오.
-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 개인을 차별하지 마십시오.
- 공중화장실 등 손 세척 시설 및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

소매 식료품점은 직원들이 다음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.

- 근로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 합니다. 직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. 직원은 자신의 페이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.
- 가능한 한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근로자(마틸다의 법에 따른 사람들)는 고객에게 덜 노출되는 업무로 교체하거나, 가능하다면 집에 머물게 허락하십시오.
-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간을 제공합니다.
- 가능한 한 적절한 청소 및/또는 소독을 위해 매일 일정 시간 매장을 닫습니다.
- 필요한 경우 직원이 손을 씻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허용합니다.
- 지침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준수합니다.
- DOH - https://coronavirus.health.ny.gov/system/files/documents/2020/04/doh_covid19_eo20216employeefacecovering_041420.pdf
- 보건부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CDC)에 명시된 청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.
 - DOH — https://coronavirus.health.ny.gov/system/files/documents/2020/06/agm-doh_covid19_cleaningfoodstores_rev_041820.pdf
 - CDC - <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2019-ncov/daily-life-coping/essential-goods-services.html>

뉴욕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뉴욕주 보건부 코로나19 웹페이지

<https://www.health.ny.gov/diseases/communicable/coronavirus/>

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19 웹페이지 <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2019-ncov/>

매장 입구 문구 예시:

***** 모든 고객에 대한 공지사항 *****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및 뉴욕주 공중 보건 규정 10 뉴욕주법 하부규정 66-3에
의거하여

매장 소유주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의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.

모든 고객은 상점을 이용하는 동안 반드시 항상 안면 가리개 착용⁽¹⁾

가족 당 한 사람만이 입점 구매

매장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보호 장비는 자택에서 폐기

고객은 노인 및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구매 시간 준수

(1) 만 2세 이상이고 안면 가리개 착용에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또는 천 소재 안면 가리개로
코와 입을 가려야 함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고령자 및 면역 손상 환자는 오전 6시부터 8시
사이, 운영 시작 후 한 시간 내에 또는 일반 고객들이 상점을 이용하기 전에 상점을 이용할
것을 권고합니다.